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심재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9. 22.

발 의 자 : 심재수 · 최정환 · 김향란

표주숙 · 김종두 · 이흥희

신재화 · 이재운 · 권재경

권순모 · 박수자 의원(11인)

1. 제안이유

가. 의원 정수 조정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폐지 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등을 일괄개정(2006. 7. 28.)한 이후 의회운영위원회가 다시 설치되었음에도 미개정 상태로 운영됨.

⇒ 의회 운영 현실에 맞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로 일괄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(의석배정), 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, 제20조 제2항(상임위가 명백하지 않은 안건의 회부), 제73조(경호)

⇒ 각 상임위원회 협의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로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사항

1) 입법예고

가. 예고기간 : 2020. 9. 22. ~ 9. 28.

나.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없음

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1항, 제16조 제2항, 제20조 제2항, 제73조 제1항의 각 조문에서
“각 상임위원회”를 “의회운영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3조(의석배정)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<u>각 상임위원회</u> 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	제3조(의석배정)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<u>의회운영위원회</u> 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
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<u>각 상임위원회</u> 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	제16조(의사일정의 작성)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<u>의회운영위원회</u> 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제20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<u>각 상임위원회</u>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	제20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<u>의회운영위원회</u> 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제73조(경호)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<u>각 상임위원회</u> 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창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.	제73조(경호)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<u>의회운영위원회</u> 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창경찰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.